검 토 보 고 서

의 안 번 호 제121호

2018. 12. 20.

건 명	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 출연 동의안 (평생교육과)	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18. 11. 19.	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8. 11. 19.	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○ 자유학년제 등의 시행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상담, 진로체험, 학교밖 청소년지원 등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,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립하려는 「논산시 청 소년행복재단」 운영을 위해 출연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O 출연기관: 재단법인 논산시청소년행복재단

○ 설립형태 : 비영리 재단법인

O 재단설립 : 2019년 상반기(예정)

○ 출 연 금 : 150,000천원

- 자본금: 50,000천원

- 재단운영 : 100,000천원

□ 검토의견

자유학년제 등의 시행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상담, 진로체험, 학교밖 청소년지원 등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,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설립하려는 「논산시 청소년행복재단」운영을 위해 출연하고자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지방지치법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

검 토 보 고 서

의 안 번 호 제122호

2018. 12. 20.

건 명	2019년도 논산시장	·학회 출연 동의	비안(평생교육과)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18. 11. 19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8. 11. 19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○ 2019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논산시 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□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 출연금 : 540,000천원
-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·양성하고 인재 육성에 적합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재단법인 논산시장학회에 출연

□ 검토의견

○ 2019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논산시 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지치법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

검 토 보 고 서

의 안 번 호 제123호

2018. 12. 20.

건 명	2019년도 > 동의안(평신	재단법인 생교육과)	충청남도인재	육성재단 출연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/	시 장	제안연월일	2018. 11. 19.
소 관 위 원 회	행정자치유	위원회	회부연월일	2018. 11. 19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○ 2019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단법인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서울 충남학사 건립비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□ 재단법인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출연금 : 330,000천원
 - 충청남도 서울학생기숙사 건립비
 - 서울(수도권)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학습환경 개선 및 학비 부담 경감.

□ 검토의견

○ 2019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재단법인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서울 충남학사 건립비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 지치법 제22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